

2009. 5. 27. (수) 10:00~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5. 25.
- 마. 의안번호 : 제2009-15호

2. 제안이유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법률 제9468호, 2009.2.12)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도록 반영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민투표법」

- 나.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을 구체화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군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2조제4항 신설).
- 다. 「주민투표법」에서 개정된 주민투표권 연령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함(안 제3조).
 - 주민투표권 연령 조정 : 20세 이상 → 19세 이상
- 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마. 「주민투표법」 등 상위법령과 개정 조례안에 맞도록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및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5. 25.
- 마. 의안번호 : 제2009-16호

2. 제안이유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거창군민상의 수상자 자격, 후보자의 추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상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상자를 전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영예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민상 시상 시기는 매년 9월 25일 군민의 날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신설).
- 나. 시상방법으로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8조 삭제).

다.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민상을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
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자격요건

- 현행 :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
- 변경 :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용어변경

- 본적지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마. 군민상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재 추천에 관한 제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삭제).

- 관할 읍·면장 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 ⇒ 관할 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3년 이내 재 추천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 바. 후보자 추천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사.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아.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9조제1항).
 -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기능에 군민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함
- 자. 위원회의 소속 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차. 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순화함.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제2조(시상 및 시상시기)에서 군민상의 시상 시기를 군민의 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현행조례 제8조에서 군민상 시상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기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중 표창·포상을 할 수는 있으나 부상의 수여는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부상수여 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상은 표창패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제3조(시상대상)의 개정내용은 군민상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 규정이며, 기타 조문 개정내용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5. 25.
- 마. 의안번호 : 제2009-17호

2. 제안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 문장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요금제기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나. 수입증지의 종류는 기본 12종으로 하되 요금제기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하고, 증지의 모양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군 심벌마크)를 추가함.(안 제7조 및 별표 1)

- 다. 직원복지회가 증지판매 계약을 하고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 중 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 위치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5항).
- 라. 증지판매소는 민원봉사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을 도모함(안 제13조).
- 마.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 납입기한
 - 금고 소재지 : 증지를 판매한 다음 날까지
 - 금고 소재지 외의 곳 : 5일 내
 -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 납입기한
 - 전자지불대행업체로부터 해당 대금을 정산받는 날의 다음 날까지
- 바. 증지는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나 요금계기에 따라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9조 단서).
- 사. 그 밖에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증지 요금제기의 사용)에서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서는 수입증지의 도안 모양에 거창군 심벌마크를 추가하였고,
 - 안 제13조(판매소의 위치)에서는 증지판매소를 민원봉사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5. 25.
- 마. 의안번호 : 제2009-18호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422호, 2009.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목적세에 대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안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한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안 제92조 및 부칙 제2조).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50%→60%, 토지 및 건축물은 65%→70%로 상향 결정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되, 2010년 법률개정 전까지 2009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 세율인하 : 1,000분의 1.5 → 1,000분의 1.4(0.01%p 인하)

5.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2009. 2. 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국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행정자치부의 권고 기준에 의거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세를 0.15% → 0.14%로 현행 대비 0.01퍼센트씩 인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5. 25.
- 마. 의안번호 : 제2009-19호

2. 제안이유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은 중단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강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의 뜻을 변경함 (안 제3조제4호).

-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자녀 → 둘째아이 이상 자녀
- 나.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따른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3조제9호).
-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 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되고 있는 임신부 건강관리비 50만원 이내 지원 조항과 이의 지원대상 자격,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 라.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 및 기준 등을 변경함(안 제11조, 제12조).
- 당초 :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20만원씩 정액 지급
 - 변경 : 둘째아이인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셋째아이 이상은 현행과 같음
- 마.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내용과 업무관장 부서를 신설함(안 제20조제7호).
-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 (1010추진단)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급은 중단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입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